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요건 강화 등〉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07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6. 12.
3. 회 부 일: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범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73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¹⁾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인한 사상사건 등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이러한 중대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중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기형의 경우 가석방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복역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사망 시까지로 연장하며,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뇌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u>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u> ----- ----- <u>양호하며</u> ----- ---- <u>형기</u> ----- ----- -----.

1)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뇌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第73條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를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②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 30년을 복역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3.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 -----. 第73條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의 사망 시까지로 한다. 또한,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유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 ----- ----- -----. ③ 무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 20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이 허가된 자가 2015년에는 1명이었으나, 2018년에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그 이후 다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17명, 2022년에는 16명, 2023년에는 12명이었는바, 대체로 무기형이 흉악범죄에 대하여 선고되며, 최근 신림역·서현역 흥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흉악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됨.

< 성인수²⁾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 현황(2014년~2023년) *단위: 명>³⁾

연도	구분	합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무기
2014		5,361 (100%)	984 (18.4%)	2,499 (46.6%)	900 (16.8%)	530 (9.9%)	160 (3.0%)	194 (3.6%)	94 (1.8%)	-
2015		5,480 (100%)	1,045 (19.1%)	2,664 (48.6%)	834 (15.2%)	514 (9.4%)	160 (2.9%)	175 (3.2%)	87 (1.6%)	1 (0.0%)
2016		7,126 (100%)	1,367 (19.2%)	3,420 (48.0%)	1,020 (14.3%)	564 (7.9%)	244 (3.4%)	267 (3.7%)	242 (3.4%)	2 (0.0%)
2017		8,247 (100%)	1,810 (21.9%)	3,840 (46.6%)	1,282 (15.5%)	614 (7.4%)	238 (2.9%)	294 (3.6%)	158 (1.9%)	11 (0.1%)
2018		8,667 (100%)	1,891 (21.8%)	3,750 (43.3%)	1,430 (16.5%)	740 (8.5%)	300 (3.5%)	315 (3.6%)	201 (2.3%)	40 (0.5%)
2019		8,139 (100%)	1,997 (24.5%)	3,415 (42.0%)	1,300 (16.0%)	672 (8.3%)	317 (3.9%)	316 (3.9%)	108 (1.3%)	14 (0.2%)
2020		7,876 (100%)	1,788 (22.7%)	3,530 (44.8%)	1,266 (16.1%)	618 (7.8%)	283 (3.6%)	249 (3.2%)	124 (1.6%)	18 (0.2%)
2021		9,354 (100%)	1,542 (16.5%)	4,388 (46.9%)	1,701 (18.2%)	819 (8.8%)	348 (3.7%)	384 (4.1%)	155 (1.7%)	17 (0.2%)
2022		10,281 (100%)	1,964 (19.1%)	4,417 (43.0%)	2,019 (19.6%)	943 (9.2%)	361 (3.5%)	457 (4.4%)	104 (1.0%)	16 (0.2%)
2023		9,483 (100%)	2,334 (24.6%)	3,946 (41.6%)	1,594 (16.8%)	780 (8.2%)	334 (3.5%)	356 (3.8%)	127 (1.4%)	12 (0.1%)

-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함.

2)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82면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수형자는 성인수형자와 구분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수형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음.

3)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83면.

1)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 변경: 가석방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복역기간 연장(20년→30년)

① 주요내용

「형법」 제72조제1항은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으로 가석방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복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무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기산일부터 20년이 경과되어야 함.

개정안은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는 무기형의 최소 복역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누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u><신 설></u>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 양호하며 ----- ----- 형기----- ----- ----- ②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 30년을 복역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3.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② 검토의견

이와 같이 무기형에 있어서 가석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복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중대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보다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2010년 형법 개정 시 무기형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이미 한차례 연장된 점, 최소 복역기간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 심사를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 변경: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 ‘형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고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① 주요내용

「형법」 제72조제1항은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으로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기형에 대한 가석방과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u>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u>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신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u>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양호하며-----형기-----</u> ②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 30년을 복역한 경우 2. <u>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u> 3. <u>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u>

개정안은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서 ‘형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고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유기형에 대한 요건은 현행과 동일).

② 검토의견

현행 「형법」상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인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는 유기형에 대한 가석방과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행상이 양호하다**는 것은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말하고, 누우침이 뚜렷한 때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수형자에게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안은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을 ‘행상이 양호하여 누우침이 뚜렷한 때’를 ‘형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고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다만, i) ‘형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고’라는 요건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ii)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형과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교화를 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기간만료 전에 석방한다는 가석방 제도의 본질은 선고형이 유기형인지 또는 무기형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

4) 『주석형법 제3판(총칙2)』, 664-668면(전승수)

므로, 유기형과 무기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가석방 기준의 수립이 필요한 점, iii) 개정안은 무기형의 경우 현행 요건 대신 ‘형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고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언은 현행 가석방 요건인 행상이 양호하고(교정성적 우수) 뉘우침이 뚜렷할 것(재범위험성 없음)이라는 요건의 취지에 포함되는 문구여서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결정기관을 ‘법원’ 으로 변경: 가석방 결정 기관 이원화

①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가석방제도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는 특색이 있음. 가석방 결정은 ① 가석방 신청(교정시설의 장) → ② 가석방 적격심사(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 → ③ 가석방 허가(법무부장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3단계 절차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석방 결정을 전적으로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찬반 논의가 있음.⁵⁾

(반대론) 가석방심사의 공정성,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와 가석방의 본질적 측면에서 법원이 가석방 심사 주체가 되는 사법처분 모델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독일·프랑스의 경우 사법형 가석방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찬성론) 사법처분이 항상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으로도 공정성과 형평성, 형벌집행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임.

5) 『주석형법 제3판(총칙2)』, 669-671면(전승수).

개정안의 경우, 유기형은 현행과 같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하는 것을 유지하되, 무기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석방을 결정하도록 하는 독일, 프랑스식 사법형 가석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u>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u> 누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 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u><신 설></u>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u>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u> ----- ----- <u>양호하며</u> ----- ----- <u>형기</u> ----- ----- -----. ② <u>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 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 <u>30년을 복역한 경우</u> 2. <u>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u> 3. <u>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u>

② 검토의견

개정안은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요건 강화와 더불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 형평성 또한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형과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의 결정기관이 행정기관(유기형)과 법원(무기형)으로 이원화되는데, i) 무기형의 가석방 결정을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형의 선고는 법원이, 그 집행은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인 점, ii) 가석방의 본질은 선고되는 형이 유기형인지 또는 무기형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기형과 무기형으로 나누어 그 결정기관을 이원화할 경우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점, iii) 사법형 가석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도 가석방 결정기관을 유기형과 무기형으로 이원화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기간 연장(10년→사망시까지)

①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석방 기간과 관련하여,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3조의2제1항).

개정안은 무기형에 있어서 가석방 기간을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의 사망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73條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第73條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의 사망시까지 로 한다. 또한,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검토의견

개정안과 같이 가석방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할 것임.

다만, ① 「형법」 제76조6)에 따르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데, 개정안의 경우 무기형의 가석방기간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의 사망시까지여서 가석방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형 집행 종료가 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76조의 규정과 다소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무기형의 경우 그 가석방기간을 죄질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사망시까지로 할 경우 개별 상황에 맞는 형 집행이 어려워지고 당사자에게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5)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① 주요내용

「형법」은 가석방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관청의 재량적 결정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3조의2제2항).

이는 가석방자의 재범방지과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로서 최소한 보호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보호관찰 부과를 규정하고, 단서의 예외조항은 범죄의 성질이나 수형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보호관찰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⁷⁾

개정안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경우에는 유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경우와 달리, ①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② 가석방기간(사망시까지)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⁸⁾

7) 『주석형법 제3판(총칙2)』, 680-681면(전승수).

8) 이와 관련한 연계법안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아니한 무기형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는 경우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06호, 권철승의원 대표발의)가 발의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第73條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假釋放된 者は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73條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의 사망시까지로 한다. 또한,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유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 ----- ----- -----. ③ 무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검토의견

개정안과 같이 가석방된 자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것인 지 여부 및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할 것인 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할 것임.

다만, i) 보호관찰은 가석방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무기형으

로 가석방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ii)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주거지 상주 및 생업 종사,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따를 것, 외출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가석방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데(「형법」 제75조),⁹⁾ 개정안에 따를 경우 무기형으로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아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각종 준수사항의 이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iii) 전자장치 부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전자장치 부착으로 보호관찰을 대체하기 어려운 점, iv)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¹⁰⁾도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등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어(제22조)¹⁰⁾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9) 「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리하면,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 요건, 가석방 결정기관, 가석방 기간 및 보호관찰 의무 부과 여부 등에 관한 개정안은 가석방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조문이 이미 한차례 개정된 점, 법체계의 정합성, 해외의 입법례, 사회의 여론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문의처

(02-6788-5056)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